공 개

의안번호	제 158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6.10. (제11차)

의결사항

김성운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※ 본 안건은 보고안건 제54호(2022년)에 근거하여 조치대상자 실명 공개

제 출 자	위원장 권 대 영
제출 연월일	2026.6.10.

1. 의결주문

□ 김성운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㈜실리콘투 주식등에 대한 지분공시 조사(조사기간 : 2025.12.10. ~ 2026.4.29.) 결과 발견된 김성운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○ ㈜실리콘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김성운은 2021.9.29. 회사의 신규상장시 특별관계자 10인(1,461,027주, 13.30%)의 보유주식등을 기재누락하였으며,

2023.10.11. 무상신주 취득 및 장내매수도 등으로 인한 변동보고와 2024.1.31. 장내매수도로 인한 변동보고시에도 특별관계자 2인의 보유주식등을 누락하여 보고하여 2021.9.29. ~ 2024.1.31. 기간 중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(기재누락 3회)

4. 조치의견

□ 김성운 : 과징금 4,900,000원 부과

○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5. 참고사항

※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

가. 관계법규 : <붙임 1>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(舊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제4항 제2호, 제147조 제1항)

나. 김성운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: <붙임 2>

(별지)

김성운에 대한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는 김성운의 舊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김성운에 대하여 동법 제42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과징금 4,900,000원을 부과한다.

□ 피조치자의 인적사항

○ 김성운

- 주민등록번호 : ******-******

- 주소 : OOOOO OOO OOOO OO, OOOO OO OOOO

□ 조치이유

○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- ㈜실리콘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김성운은 2021.9.29. 신규상장시 특별관계자 10인의 보유주식등을 누락하여 보고하였으며, 이후 김성운 등의 장내매수도 등으로 인한 변동 보고시에도 특별관계자 2인의 보유주식등을 기재누락하는 등

- 2021.9.29. ~ 2024.1.31.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대량보유(신규·변동)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

<붙임 1>

관계법규

□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147조(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)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(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을 대량보유(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)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 이내에 그 보유상황, 보유 목적(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),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,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(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(임원의 선임·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,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)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429조(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) ① ~ ③ (생 략)

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)의 10만분의 1(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1. 제147조제1항·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2.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

⑤ (생 략)

<붙임 2>

김성운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

Ⅰ. 산정원칙

□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(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[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4항]

Ⅱ. 산정결과

□ **과징금 부과결정액 : 4,900,000원**

(단위 : 원)

구 분	과징금 부과금액
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	4,900,000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공정시장과	기업공시국
연 락 처	02-2100-2688	02-3145-8479